

노인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로댐요양원(이하 '시설') 대상자의 노인인권의 영역과 세부권리를 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실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이 시설의 모든 대상자 및 종사자로 한다.

제3조(지침근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인권위원회 길라잡이

제4조(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제5조(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마.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사.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6조(노인학대 예방방법) 시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상자 및 주 수발자에게 [별표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안내를 제공하고 노인학대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 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노인학대 사례 업무처리 안내를 참조한다.

가. 노인 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한다.

나.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다. 익명의 노인학대 신고자에게 신고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고 신고자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 노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마.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위급성, 중복 의뢰여부를 파악한다.

바. 노인학대 사례로 적합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신고한다.

아. 노인학대 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자. 노인학대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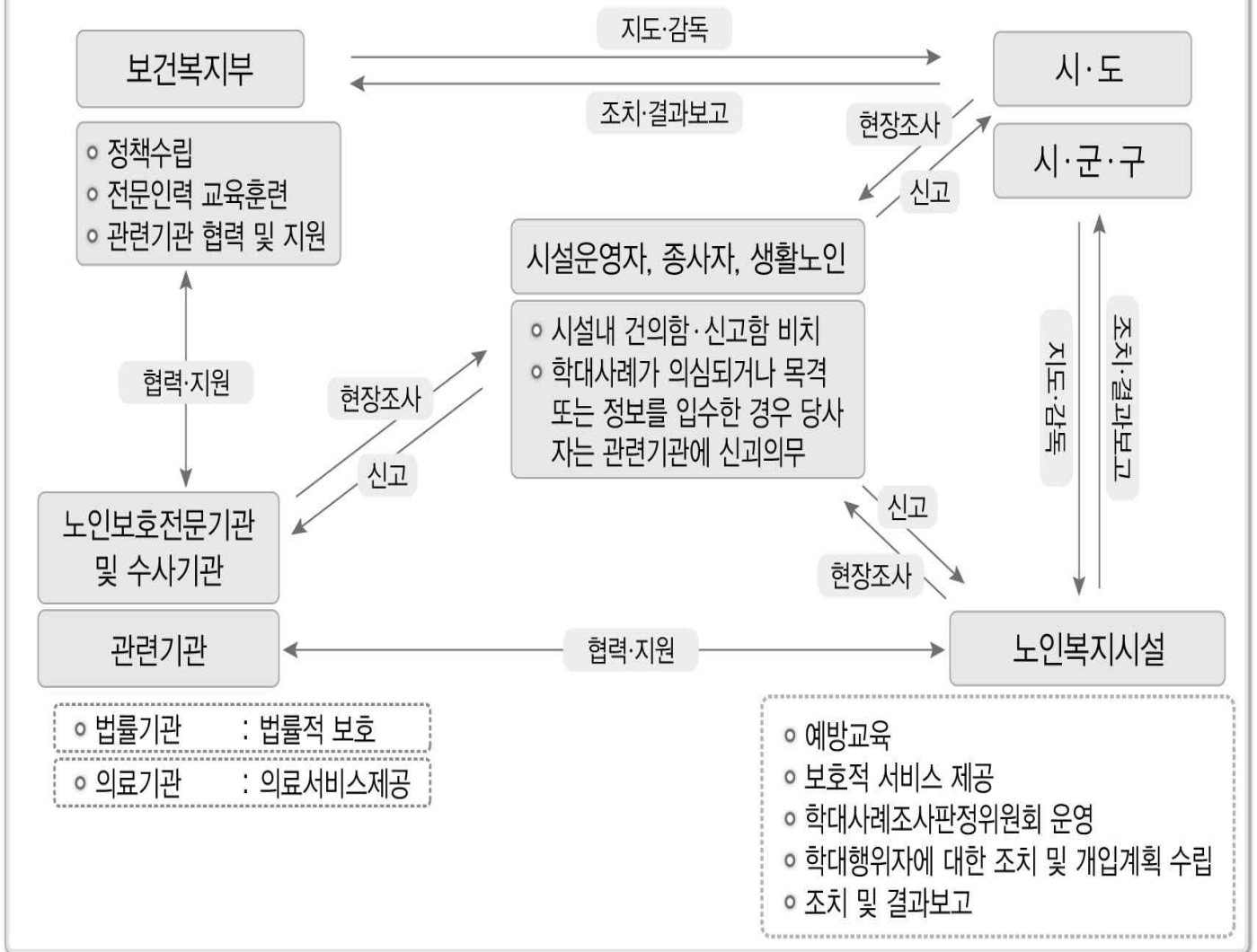
차. 주 수발자 또는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가 되도록 지원한다.

제8조(생활노인의 세부별 권리보호 지침)

단계	서비스 내용	인권 영역과 항목
입소 이전 단계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	거주인전과 선택의 자유권 시설에 관한 정보접근권
	입소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시설운영 및 입소 절차에 관한 정보접근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권
	입소결정과입소계약	입소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의 자기결정권 입소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입소초기단계	시설 생활 안내	시설 생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시설 생활 권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시설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입소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노인의 사정 과정 참여와 자기 결정권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신체적 자유권
	서비스 계획 수립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초기 적응 지원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 서비스 이용의 자유권
입소 생활단계	시설생활의 기본 처우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일상생활 지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한 동

		등한 접근권
	여가,문화,경제,노동,정치,종교활동	공평한 여가문화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가문화생활 서비스의 선택권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개인소유물 관리 및 소비 활동의 권리 노동 활동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생활환경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을 누릴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특수욕구 및 개별적 욕구	개인적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 충족에 대해 요구할 권리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치매 등 특수 질환	치매 등 특정 질환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치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자결정의 권리
	서비스 선택과 변경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서비스 이용 지원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퇴소단계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퇴소 상담	의사표현의 자유권 퇴소의 자기 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서비스 의리 및 추후 서비스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 결정권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노인학대신고: 국번없이 129

노인학대상담: 1577-1389